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2. 4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18일 빈웅길의원외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월 2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87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2년 2월 2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빈웅길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2000. 7. 1)의 개정과 예산의 결산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적용,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처리안건을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함.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함.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9, 10월중에 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함.
  -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부의안건으로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조정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결산을 매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에서 제2차 정례회 처리안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집회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이고,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당초 7, 8월중에 집회하던 것을 9, 10월중으로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임.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 해의 업무계획,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켜 반영함으로써 감사의 능률성을 고려하고,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1년 단위로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안년월일 : 2001. 1. 18  
제안자 : 빈웅길의원외6인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이 2000년 7월 1일 개정·공포·시행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1, 2차 정례회 집회시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
- 업무의 일관성과 회계연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시 실시코자 하는 것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1항)

### 2.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개정(안 제4조의제1호)
- 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을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개정(안 제4조의제2호)
- 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기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제5조제①항중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으로 한다.

제5조제②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②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안)
<p>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p> <p>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매년 7월 1일에 .....</p> <p>.....</p> <p>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p> <p>2. .... 매년 11월 25일에 .....</p> <p>.....</p> <p>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②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p>